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6. 6. 29.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일부개정	2019. 2. 8.
일부개정	2019. 2. 15.	일부개정	2019. 5. 20.
일부개정	2019. 9. 26.	일부개정	2020. 1. 14.
일부개정	2020. 9. 29.	일부개정	2021. 1. 8.
일부개정	2022. 1. 5.		

---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개정사항

### < 2022. 1. 5. 제16차 개정 >

- 2022. 보수지급 기준표 개정
-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 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 I. 추진 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 II.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 1.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 ❖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 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구 분	현 행	개 선
급여체계	기본급 + 7개수당(자활) 기본급 + 9개수당(여성) 기본급 + 5개수당(아동)	기본급 + 2개 수당 * 분권시설과 동일
직급체계	4개 직급(자활) 7개 직급(여성) 2개 직급(아동) 3개 유형 (유형별로 2~7개 직급)	단일 직급체계 (9개 직급)
정원책정	-	시설별·직급별 정원 책정

## 2. 보수 현실화

-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 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보수 현실화 목표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대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위직위) 84%	90%	93%	96%	100%
(고위직위) 77%				

## 3. 급여체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별도 수당 설치 금지

구 분	현 행		개 선 (2015년 시행)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기본급	연 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토요근무수당 기타 상여금	
		추가운영비	
		명절(효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계		연봉 + 3개수당	

## 4. 직급체계 개선

○ <개선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 직급체계화> <개정 2016. 6. 29.>

-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축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22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직급체계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22년 보건복지부 축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7급	(관리직) 4급	
축탁의사	(의료직) 축탁의사	

\* 보수지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 5.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현 시설 근무연수임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 주1) 직급별 승진은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  
 주2)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은 적용 제외

## 6. 채용 및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 (채용)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
  -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 (최초 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에 따라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 \*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제외)

### 1 시설장

-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 2 사무국장

### ○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 3 일반종사자

-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 직급 부여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역자활센터	실장	부·과장	팀장				
여성인권시설		상담원	상담원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복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과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요양보호사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센터		과장		요양보호사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상담원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	상담원	상담원 사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		보육사			
공동생활가정				보육사			
청소년쉼터			팀장, 상담원		행정원		
다문화가족		팀장	팀원				
노숙인재활시설	사무국장	정신보건 전문요원		상담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주1) 최초 채용직급은 시설별 해당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부여

<예시> 자격조건이 2급이라 하더라도 2급 정원이 없으면 3급으로 부여하되, 해당직급 결원시는 승진 최소연한에 관계없이 승진가능

주2)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최초직급 부여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주3)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단, 정원 범위내)

## 7.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직급별 정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시설 자체 부담으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5. 1. 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 2015. 1. 1 이후 다음 직급으로 승진임용은 해당 직급(승진 임용된)에서 해당 시설에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주1) 5인 미만 시설장인 경우 인건비 지원은 사무국장급으로 조정 부여

주2) 여성인권시설인 경우 (상담원 3명이상) 5인 이상 시설에 대해 2급 1명 정원책정



## 8. 인건비 지원대상 종사자 직위(급) 부여기준(최초 제정시)

### □ 2015년 1월 1일 기준(최초 직급부여)

-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임
- 2015. 1. 1기준(안)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최초지원 직급에서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이 경과해야함(예시) 직급별 승진최소 연한 : 2급은 4년이상, 3급 3년 이상 현시설 근무자

-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현재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호봉확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미적용)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 미인정.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 현행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
  - (1직급 승진임용 원칙) 5급→4급, 4급→3급, 3급→2급
  - 단)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하되,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임용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함

### □ 최초직급부여 이후(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개정 2016. 6. 29>

-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7.1.1.부터 적용) <2017.12.31. 삭제>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년 승진자 포함) <2018.1.1. 시행>
  - \* 단, 2015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2015년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 확정하되 재확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확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 상위직급으로 승진은 해당 직급에서 해당시설에 승급 최소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24개월이상(해당직급 승진 최소연한 충족) 근무해야 함  
단,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단, 정원 범위내)

### Ⅲ. 보수지원 기준

#### 1. 적용 보수표

구 분	개소수	인원	적용보수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0	441	-									
지역자활센터	4	26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 설 보수기준 표					
성폭력피해상담소	2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2										
성매매피해상담소	1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	5										
성매매피해자지활지원센터	1	6										
가정폭력상담소	3	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3										
여성긴급전화1366	1	16										
이주여성쉼터	1	5										
폭력여성이주여성쉼터	1	8										
지역아동센터	66	147										
다함께돌봄센터	1	2										
아동보호전문기관	2	26						90%	93%	96%	100%	100%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공동생활가정	4	12										
노인보호전문기관	2	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청소년복지시설	7	44										
다문화가족	2	10										
건강가정지원센터	1	5										
노숙인재활시설	2	40										

## 2.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1) 시설별 지원시간

- 이용시설 : 지원상한 월 2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생활시설 : 지원상한 월 4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생활시설 기준 지원상한시간 적용

### 2)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 2022. 1. 5. >

- (산정기준) 전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대비 보건복지부 보수기준 인상률 1.4% 적용

구 분	시설장	사 국 무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2년	(미지원)	12,070	10,920	10,460	10,000	9,560	9,110	8,650	8,220
2021년	(미지원)	11,910	10,770	10,320	9,870	9,430	8,990	8,540	8,110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 위 기준은 시설지원 단가로,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3. 사회복지시설 연봉제 시행(권장)

시행일 : 2015년

급여체계

- 급여체계 : 연봉 + 3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총액을 시설별 보수지급지침에 의해 지급
-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매월 적립)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퇴직시 또는 매년 지급)

## 4. 종사자 인건비 지원방식

**인건비 지원내역(연간)** <개정 2016. 6. 29>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 여	연 봉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 당	가족수당	◦ 1인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 부양가족수 : 4인이내 (자녀의 경우 4인초과 가능) * 둘째자녀 월40천원, 셋째이후 자녀는 월 80천원 가산	매 월	기타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4), 노숙인시설(2)	매 월	
4대 보험		◦ 총 급여의 일정분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4대보험 요율표 :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에 의함**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인건비 지원**

- 보수지급 기준표와 시설별로 종사자의 직급별 호봉별 인건비 총액 산정 후 국고지원 기준액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총액 : 연봉 + 2개 수당(시간외·가족수당) + 4대 보험 + 퇴직적립금 등

※ 국고지원 기준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 지방비 보전

○ **집행 및 정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설별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0.1.14. 13차 개정>

- \*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시행
- \* 도 인건비 지원 기준 미준수시 지원 불가

## IV. 기 타

- 최초 제정일 : 2015. 4. 3. (적용시기 : 2015. 1. 1.)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6. 6. 29.)
  - 2016. 2. 22.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변경
  - 2016. 4. 11.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 2016. 6. 29.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한 보수체계 적용 변경  
(단, 직급별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및 승진시 호봉 적용기준 개정사항은 2017.1.1.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7. 9. 24)사항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 가이드 일부개정 : 2018.2.26. (보수기준표 및 시간외수당)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8. 4. 2.(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개소 시설 정원조정, 지역아동센터 정원조정 및 폐업시설 정원 삭제)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8.(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15.(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5. 20.(시간외수당 단가 변경)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9. 26.(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1. 14.(보수, 시간외수당, 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9. 29.(시설 유형 추가, 정원 조정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1. 1. 8.(보수지급 기준표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2. 1. 5.(보수지급 기준표 등)

[별표 1]

2022.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년)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34,986,600	32,968,320	31,369,800	28,905,360	27,485,040	26,257,440	25,743,960	25,557,840	25,271,400
2호봉	36,251,160	34,115,400	32,445,600	29,680,200	28,195,200	26,671,920	26,411,880	26,067,360	25,576,320
3호봉	37,629,240	35,414,280	33,694,320	30,528,960	29,051,880	27,265,920	26,962,320	26,634,960	26,076,600
4호봉	39,065,400	36,692,040	34,976,040	31,834,440	29,908,560	28,028,880	27,668,520	27,181,440	26,608,560
5호봉	40,790,640	38,148,000	36,356,760	33,219,120	30,775,800	28,826,160	28,403,760	27,763,560	27,131,280
6호봉	42,515,880	39,733,320	37,906,440	34,651,320	31,963,800	29,623,440	29,278,920	28,377,360	27,796,560
7호봉	44,241,120	41,400,480	39,458,760	36,148,200	33,178,200	30,789,000	30,474,840	29,479,560	28,311,360
8호봉	45,982,200	43,140,240	41,128,560	37,658,280	34,462,560	32,006,040	31,652,280	30,657,000	29,116,560
9호봉	47,737,800	44,880,000	42,853,800	39,210,600	35,811,600	33,217,800	32,658,120	31,274,760	30,096,000
10호봉	49,404,960	46,577,520	44,561,880	40,703,520	37,066,920	34,355,640	33,500,280	32,213,280	31,188,960
11호봉	51,072,120	48,128,520	46,156,440	42,084,240	38,326,200	35,424,840	34,646,040	33,426,360	32,052,240
12호봉	52,710,240	49,535,640	47,547,720	43,330,320	39,383,520	36,270,960	35,567,400	34,399,200	32,897,040
13호봉	54,117,360	50,784,360	48,768,720	44,419,320	40,399,920	36,977,160	36,321,120	35,312,640	33,785,400
14호봉	55,267,080	51,957,840	49,983,120	45,477,960	41,371,440	37,848,360	36,932,280	35,950,200	34,478,400
15호봉	56,426,040	53,074,560	51,202,800	46,491,720	42,302,040	38,673,360	37,671,480	36,466,320	35,023,560
16호봉	57,522,960	54,145,080	52,290,480	47,448,720	43,197,000	39,530,040	38,323,560	37,176,480	35,637,360
17호봉	58,549,920	55,049,280	53,232,960	48,362,160	44,039,160	40,381,440	38,947,920	37,872,120	36,249,840
18호봉	59,522,760	55,978,560	54,179,400	49,247,880	44,852,280	41,193,240	39,687,120	38,569,080	37,208,160
19호봉	60,432,240	56,864,280	55,021,560	50,030,640	45,604,680	41,923,200	40,414,440	39,156,480	37,917,000
20호봉	61,245,360	57,705,120	55,836,000	50,813,400	46,339,920	42,633,360	41,148,360	39,724,080	38,514,960
21호봉	62,042,640	58,461,480	56,634,600	51,536,760	47,022,360	43,273,560	41,799,120	40,402,560	39,188,160
22호봉	62,810,880	59,172,960	57,369,840	52,236,360	47,670,480	43,919,040	42,391,800	41,170,800	39,961,680
23호봉	63,526,320	59,884,440	58,070,760	52,900,320	48,292,200	44,507,760	43,070,280	41,968,080	40,725,960
24호봉	64,202,160	60,565,560	58,724,160	53,486,400	48,887,520	45,089,880	43,645,800	42,707,280	41,479,680
25호봉	64,859,520	61,189,920	59,377,560	54,068,520	49,459,080	45,641,640	44,251,680	43,389,720	42,238,680
26호봉	65,399,400	61,798,440	59,945,160	54,636,120	50,018,760	46,148,520	44,791,560	43,985,040	42,939,600
27호봉	65,948,520	62,322,480	60,482,400	55,115,280	50,474,160	46,584,120	45,227,160	44,572,440	43,525,680
28호봉	66,427,680	62,731,680	60,960,240	55,536,360	50,889,960	46,949,760	45,529,440	44,976,360	43,962,600
29호봉	66,794,640	63,111,840	61,365,480	55,931,040	51,274,080	47,299,560	45,774,960	45,429,120	44,418,000
30호봉	67,103,520	63,506,520	61,791,840	56,296,680	51,613,320	47,629,560	46,023,120	45,708,960	44,821,920
31호봉	-	63,666,240	62,058,480	56,659,680	52,008,000	48,011,040	46,301,640	46,178,880	45,134,760

- \*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보수기준표(장애인/일반직)\*12월) + 명절휴가비(복지부 보수기준표 기본급의 120%)
-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미포함
- \* 촉탁의사 기본급 : 2,939,600원 / 연봉 : 기본급 \* 12개월 + 명절휴가비 120%

[별표 2]

# 시설별 정원표

(2020.9. 29.기준)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총합 의사
			계	시설 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계 (110개 시설)			441	105	2	15	30	132	134	14	4	3	2
1	지역자활센터 (4)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6	1		1		1	3				
2		수놓음 지역자활센터	8	1		1	1	2	3				
3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7	1		1	1	1	3				
4		서귀포 오름 지역자활센터	5	1		1			3				
5	성폭력피해상담소 (2)	제주YWCA 통합상담소	4	1				3					
6		제주여성상담소	4	1				3					
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제주YWCA여성쉼터	5	1			1	2		1			
8		그린터	7	1			1	3		2			
9	성매매피해 상담소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남	5	1			1	2		1			
10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여성의 쉼터 불턱	5	1				2		1		1	
11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자활지원센터	6	1			1	3		1			
1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행복상담소	6	1			1	4					
13		제주가족사랑상담소	5	1			1	3					
14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7	1			1	5					
1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생명의 샘	6	1			1	4					
16		뜨樂(구, 가족사랑쉼터)	7	1			1	5					
17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16	1			1	14					
18	이주여성쉼터	שלמחן 물가	5	1			1	3					
19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8	1			1	6					
20	지역아동센터 (67)	1318 해피존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1					1				
21		1318 해피존 찬란한미래 지역아동센터	3	1					2				
22		고산지역아동센터	2	1					1				
23		구엄지역아동센터	2	1					1				
24		김녕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	1					1				
25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	1					1				
26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2	1					1				
27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2	1					1				
28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2	1					1				
29		대화 지역아동센터	2	1					1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추탁의사	
30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1					1					
31		봉개 지역아동센터	2	1					1					
32		봉아름 지역아동센터	2	1					1					
33		빛과 소금 지역아동센터	2	1					1					
34		새순 지역아동센터	3	1					2					
35		수정 지역아동센터	2	1					1					
36		신촌 지역아동센터	2	1					1					
37		외도 지역아동센터	2	1					1					
38		용담 지역아동센터	3	1					2					
39		우도 지역아동센터	2	1					1					
40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2	1					1					
41		우리하도 지역아동센터	2	1					1					
42		원 지역아동센터	2	1					1					
43		이호 지역아동센터	2	1					1					
44		제일 지역아동센터	3	1					2					
45		조천 지역아동센터	2	1					1					
46		종달 지역아동센터	2	1					1					
47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3	1					2					
48		청수 지역아동센터	2	1					1					
49		하소로 지역아동센터	3	1					2					
50		한라 지역아동센터	2	1					1					
51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2	1					1					
52		함덕 지역아동센터	2	1					1					
53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3	1					2					
54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2	1					1					
55		홍익 지역아동센터	2	1					1					
56		화북 지역아동센터	2	1					1					
57		가마 지역아동센터	2	1					1					
58		감산 지역아동센터	2	1					1					
59		대정골 지역아동센터	2	1					1					
60		대정 지역아동센터	2	1					1					
61		동신패이디온 지역아동센터	2	1					1					
62		동흥 지역아동센터	2	1					1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추탁의사	
63		모슬포 지역아동센터	2	1					1					
64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2	1					1					
65		보목 지역아동센터	2	1					1					
66		비전 지역아동센터	3	1					2					
67		삼육 지역아동센터	3	1					2					
68		샘물 지역아동센터	3	1					2					
69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3	1					2					
70		성산포 지역아동센터	2	1					1					
71		성읍 지역아동센터	2	1					1					
72		소망 지역아동센터	2	1					1					
73		신례 지역아동센터	2	1					1					
74		신평 지역아동센터	2	1					1					
75		신흥 지역아동센터	2	1					1					
76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3	1					2					
77		안덕 지역아동센터	2	1					1					
78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2	1					1					
79		위미 지역아동센터	2	1					1					
80		중문 제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2	1					1					
81		중문 지역아동센터	3	1					2					
82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3	1					2					
83		LH행복꿈터삼화 지역아동센터	3	1					2					
84		꿈지킴이 지역아동센터	2	1					1					
85		담쟁이지역아동센터	2	1					1					
86	다함께돌봄센터(1)	다함께돌봄센터	2			1			1					
87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4	1		4	4	3	2					
88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2	1		3	4	3	1					
89	학대피해아동쉼터 (3)	빙새기 그룹홈	5	1			1		3					
90		아이오름 그룹홈	5	1			1		3					
91		보듬이 그룹홈	5	1			1		3					
92	공동생활가정 (4)	제주몽생이 그룹홈	3	1					2					
93		제주소나이 그룹홈	3	1					2					
94		예향원그룹홈	3	1					2					
95		예향숲그룹홈	3	1					2					
96	노인보호전문기관 (2)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7	1		1	1	1	3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97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7	1				1	5					
98	노인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제주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				1		3					
99	청소년복지시설 (7)	제주도청소년일시쉼터(고정형)	10	1				9						
1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6	1				5						
101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5						
102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5						
103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6	1				5						
104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8	1				7						
105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 지원시설	2	1				1						
1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1	1	4						
107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	3						
108	건강가정지원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5				1	4						
109	노숙인재활시설 (2)	제주시 희망원	21	1	1	1		5	4	5	2	1	1	
110		서귀포시 사랑원	19	1	1			5	5	3	2	1	1	